



김 승 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

한국사회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과제

1980년대에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법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발전을 하였고, 1997년 말에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가정폭력이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및 정책적 노력은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가정폭력방지보완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당시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의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분위기에서 가정보호를 입법 목표로 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근거해 설치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활동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음이 사실이다.

가정폭력 발생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보다 적극적인 가정폭력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전국실태조사가 2004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다. 최근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가정의 폭력발생률은 50.4%로 두 가정 중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을 나타냈다. 특히, 정서적 폭력이 46.2%로 가장 심하였고, 신체적 폭력도 30.7%로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 성학대도 9.6%나 되었음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수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더 나아가 법원에 계류되는

경우는 매우 미흡하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과 관계자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고, 폭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가정폭력 관련 법의 주무부처는 여성부이고, 조직, 재정, 인력 등 가정폭력 전달체계도 여성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 아내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가정폭력에는 아내폭력 외에도 남편폭력, 아동학대, 노부모학대, 형제자매 간의 폭력 등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이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개별 담당 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효율적 대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진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 내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부응하여 보호와 지원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관련법이 피해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가정의 육성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건전한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선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내용상의 ‘가정보호의 이데올로기’는 피해자보호라

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호시설의 기능을 보면, ‘일시적인 단순보호’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의 가정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단기간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폭력사건이 일회적인 폭력행사라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피해자보호 정책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스러워지기 위해서는 능력향상, 자립 및 자활 등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정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를 제대로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법안 마련이 중요하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진 피해자가 주체적인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기관, 취업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이 연계하는 협력적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